

2. 勤勞者住宅建設施行指針 改正

資料提供：建設部

건설부는 '94. 2. 25부터 현행 행정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을 건설부훈령인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으로 하고, 입주대상 확대 및 입주자격 완화등 현행 지침을 대폭 정비·보완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입주대상 확대 및 입주자격 완화

- 현행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업, 운수·창고, 통신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에 광업, 건설업, 자동차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등을 추가하고,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하인 자"로 되어 있는 입주자격요건중 "부양가족 및 소득제한"요건 삭제

□ 근로자주택 건설계획물량 초과시 조정절차 간소화

- 근로자주택건설 신청물량이 시·도의 건설계획물량을 초과할 경우 시·도지사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계획물량을 조정하였던 것을 시·도지사가 건설계획물량의 1.5배 범위내에서 건설계획물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도록 하였음.

□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가점부여

- 종합점수제에 의한 입주자선정시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가점부여

- 자사소속 근로자에 대한 입주우선권 부여
 - 기업체가 직접건설하는 주택중 미분양세대에 대한 입주대상자 추가모집시 무주택기간인 1년미만인 자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지금까지 별도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일반분양주택과 별개의 동으로 구분하여 근로자주택을 건설·공급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분양주택과 혼합건설·공급토록 하므로서 근로자의 집단거주지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94. 1. 12근로자주택의 공급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도 및 관련단체에 이미 통보하였음.
※ 근로자주택건설을 보다 촉진하고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에 따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호당융자액을 근로복지주택은 현행 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사원임대주택은 현행 1,6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94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확정하여 빠르면 3월 중에 시행할 계획임.

나. 기대효과

- 금융업과 서비스업종등을 제외한 입주대상업종의 확대와 입주자격요건의 완화로 전체 무주택세대주의 71%(약135만명)가 근로자주택의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서 전년도(38천호 건설)에 비하여 근로자주택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보임.

I. 근로자주택의 개요

- 목 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근로의욕의 고취로 산업평화를 정착하여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자 '90년부터 도입
- 주택규모 및 유형 : 전용면적 18평이하
 - 근로복지주택 :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 사원임대주택 : 고용자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을 분양받거나 직접 건설하여 자사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격

- 5인이상 상시종업원을 가진 제조업, 전기·가스 및 증기업, 운수·참고 및 통신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종사근로자(전근로자의 65%수준)
- 부양가족이 있는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다만, 기혼근로자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이를 세대주로 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10년이상 근속자는 소득제한없음)

○ 웅자조건

	근로복지주택(입주자)	사원임대주택(고용자)
금액	세대당 1,400만원	세대당 1,600만원
이율	연8.5~7.5%	연3%
기간	5년거치 20년 상환	5년거치 20년 상환

※ 건설실적(단위 천호)

계	'90	'91	'92	'93
182	61	37	46	38

II. 주요 개정내용

〈개정이유〉

정부는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노사화합으로 산업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90년부터 근로자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안정등의 요인으로 건설·공급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어, 입주대상 확대 및 입주자격 완화 등을 통한 근로자주택공급의 활성화로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현행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1. 근로자주택건설 신청물량이 시·도 건설계획물량을 초과할 경우 조정(안 제5조)

<현 행>

- 시·도지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계획물량을 조정

<개정안>

- 시·도지사는 건설계획물량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건설계획물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

<사유 및 기대효과>

- 주택수요예측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일정범위 내에서의 건설계획물량을 시·도지사가 조정토록 함
- 물량배정절차의 간소화로 사업시행의 적시성 도모

2. 입주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

<현 행>

- 5인 이상의 상시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전기·가스 및 중기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개정안>

- 현행 입주대상에 “광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추가

<사유 및 기대효과>

- 입주자격을 '90년 근로자주택제도 도입 당시 “제조업”종사자에 한정하였으나 주거 안정에 의한 노사화합과 산업경쟁력제고 차원에서 '93년에 “제조업 관련일부업종”으로 입주대상자를 확대
- 제외업종과의 형평성제고 차원에서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입주대상업종을 가급적 많

이 포함

- 근로자주택건설 촉진으로 노사화합에 의한 산업경쟁력 제고

3. 입주자격의 완화(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현 행〉

- 무주택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통계청장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개정안〉

- 현행 입주자격요건 중 “부양가족 및 소득제한”요건 삭제

〈사유 및 기대효과〉

- 근로자주택의 유효수요등을 감안할 경우 소득규제 불필요
- 수혜대상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촉진

4. 기업체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중 미분양세대에 대한 추가모집(안 제7조 별첨1)

〈현 행〉

- 1순위 : 자사소속 근로자로서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자
- 2순위 : “1순위”자중 소득수준을 초과한 자

〈개정안〉

- 1순위 : 자사소속 근로자로서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자
- 2순위 : 자사소속 근로자중 무주택세대주인 자

〈사유 및 기대효과〉

- 노사화합 측면에서 자사소속 근로자에게 입주우선권 부여

- 자사소속 근로자의 복지향상으로 노사화합에 의한 산업경쟁력 제고

5.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가점부여(안 제12조)

〈현 행〉

“규정 없음”

〈개정안〉

- 종합점수제에 의한 입주자선정시 가점부여

〈사유 및 기대효과〉

-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입주자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므로서 경로효친사상거양

※ 근로자주택 공급방법 개선

- 근로주택을 일반분양주택과 혼합건설·공급토록 하므로서 근로자주택건설촉진
('94. 1. 12 시·도,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통보)

'94년은 성실시공 元年の 해